

음식점 등 가격 표시제 시행 안내

01 모든 식품접객업소 “최종지불가격” 표시제 시행(‘13.1.1일 시행)
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(위탁급식영업은 제외)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,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“최종지불가격”으로 표시

▶ 위반 시 : 1차(시정명령), 2차(영업정지 7일), 3차(영업정지 15일)

기 존	변 경
○○음료 ... 10,000원 ○○요리 ... 20,000원 ※ 봉사료 10%, 부가가치세 10% 별도	○○음료...12,000원 ○○요리...24,000원

2013. 1. 1 부터
.....▶

02 불고기,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 표시(‘13.1.1일 시행)

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,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 가능.

▶ 위반 시 : 1차(시정명령), 2차(영업정지 7일), 3차(영업정지 15일)

기 존	변 경
갈비 1인분 180g ... 18,000원	갈비 100g ... 10,000원
등심 1인분 150g ... 33,000원	등심 100g ... 22,000원 (1인분 150g ... 33,000원)

2013. 1. 1 부터
.....▶

❖ 식육 중량 표시 적용범위(예시)

- ▶ 생고기(소고기, 돼지고기 등)를 구워먹는 경우
 - ▶ 양념된 갈비, 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
 - ▶ 요리(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)의 고기 추가 주문 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
 - ▶ 애벌(훈제 등)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
- ※ 적용제외 되는 사례
- ① 탕, 찜, 찌개, 보쌈, 족발(닭발), 육회, 스테이크, 돈까스, 바베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바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
 - ② 샤브샤브, 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 (단, 추가고기는 표시대상)
 - ③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, 오리 등은 제외

03

음식점 「옥외가격 표시제」 시행('13.1.31일 시행)

신고 면적이 150㎡(45평)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주요메뉴 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 표시(2013.4.30 까지 계도기간 운영)

▶ 위반 시 : 1차(시정명령), 2차(영업정지 7일), 3차(영업정지 15일)

●● 대상업소

▶ 신고 면적이 150㎡(45평) 이상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

●● 표시품목 수

▶ 주요 품목 5가지 이상, 취급메뉴 5가지 미만일 경우 전 품목 표시
* 공기밥, 라면사리 등은 제외

●● 가격표 디자인 · 규격

▶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는 범위 내 자율적 시행
▶ 가격표 양식(디자인)은 향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예정

●● 게시위치 및 방법(*옥외광고물 등 관련법규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게시)

▶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
▶ 창문, 외벽면, 집합건물의 이동통로(1층 로비 · 승강기 입구 등) 게시 가능
* 실외 입간판 · 베너(이젤 포함) · 현수막 형태로 게시는 불가
⇒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

▶ 기존 메뉴판(책자형 포함)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.
▶ 투명한 창문, 출입문 등의 내부에 직접 부착하여 옥외 게시물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본다.
▶ 푸드 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.

●● 문의절차

▶ 시청 위생정책과 : 031)228-2227, 2676
▶ 장안구청 : 031)228-5328
▶ 권선구청 : 031)228-6326
▶ 팔달구청 : 031)228-7394
▶ 영통구청 : 031)228-8923

